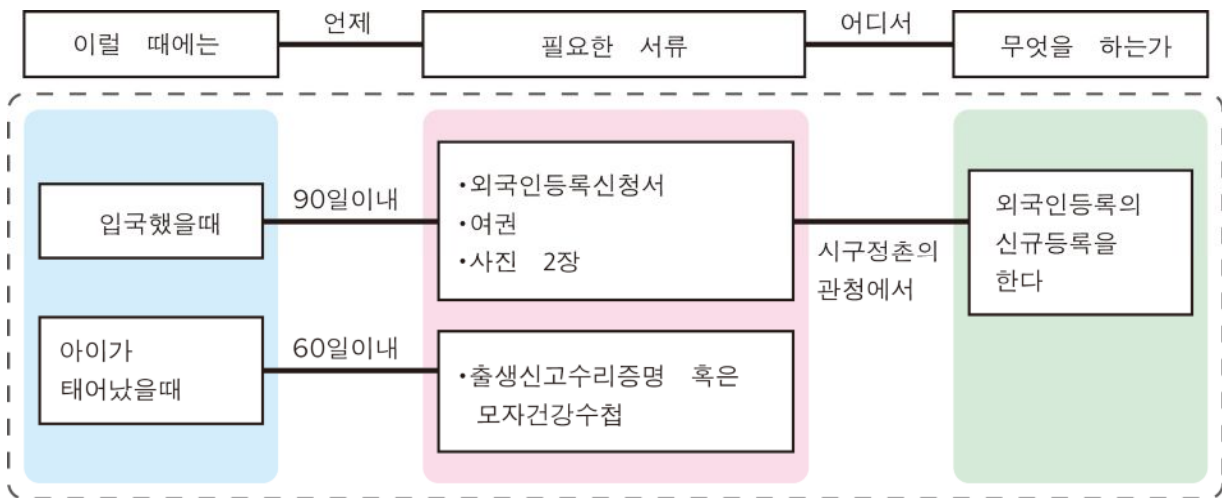


IV 재류수속 · 결혼 · 이혼

IV-1 외국인등록

일본에 입국한 외국인이나 일본에서 태어난 외국인에는 외국인등록이 의무화 되어있습니다. 외국인등록후에 교부되는 외국인등록증은 신분증이 되며 16세이상인 분은 상시 휴대하여 담당관의 요구가 있으면 제시해야 합니다. 단 2009년 이후 3년에 걸쳐 외국인등록의 구조가 크게 변경되었습니다. 상세한 사항은 입국관리국 (부록IX-1 67페이지) 까지 문의하여주십시오.

1. 신규등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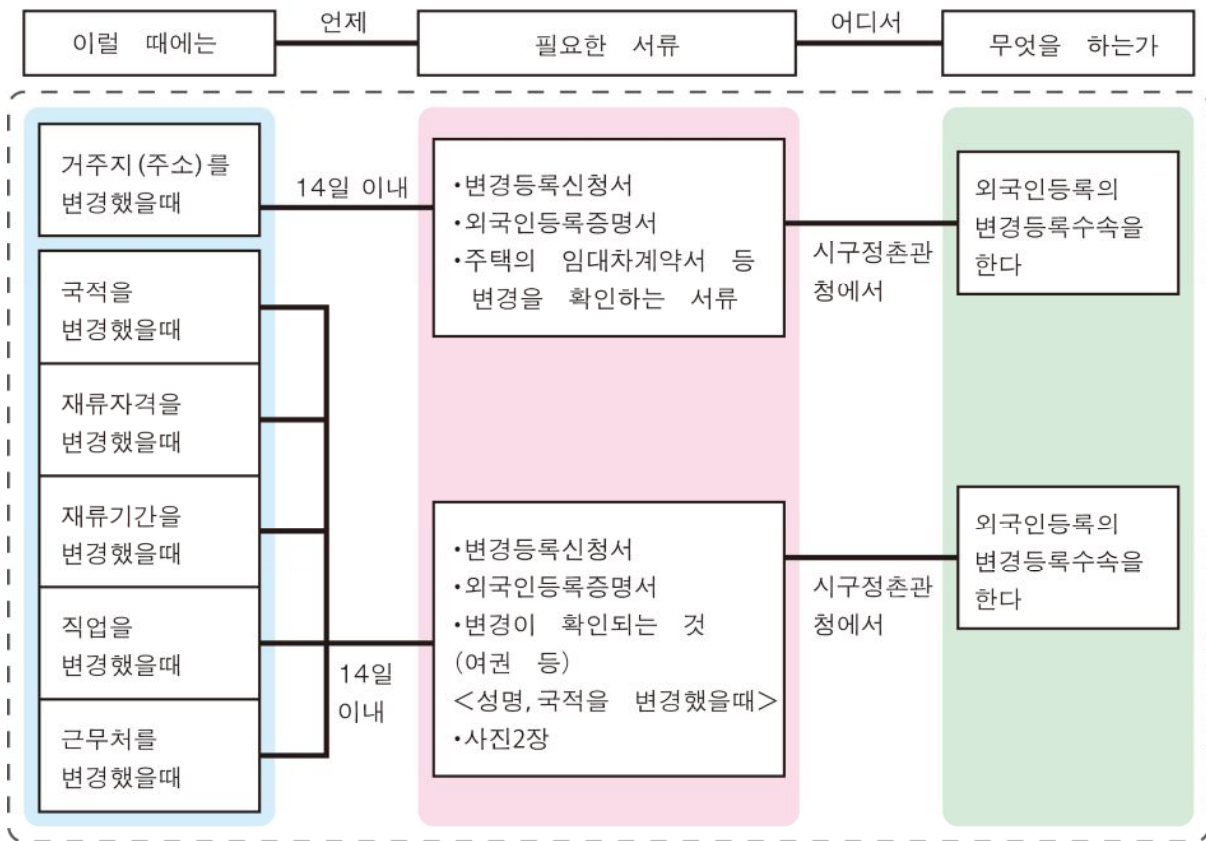
귀하가 이하의 조건에 해당되는 경우 거주하는 시구청촌사무소에서 외국인등록을 진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 ① 일본국적을 가지고 있지 않다.
- ② 90 일 이상 일본에 재류한다.

일본국적을 가지고 있지 않은 아이를 출산할 경우는 출생일로부터 60 일 이내에 외국인등록을 해야 합니다. 사진 (4.5cmx3.5cm) 2 장과 여권을 제시합니다. (16 세미만사진 불필요)

이 등록은 앞으로 본인의 일본에서의 주소를 증명하는 등 각종수속이나 계약을 체결시 유익하게 쓰이므로 등록의무가 있으신 분은 등록하여 주십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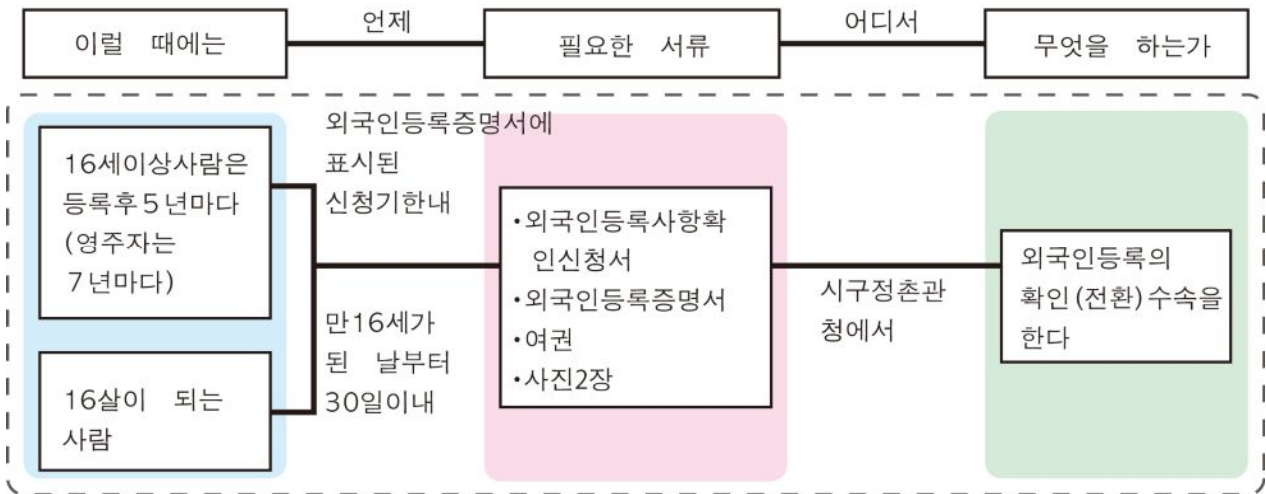
2. 변경등록



외국인등록의 등록사항들중 거주지(주소), 성명, 국적, 직업, 재류자격, 재류기간, 근무처 혹은 사무소의 명칭 및 주소가 변경 되었을 경우에는 14일내에 시구청·촌사무소에 신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부록IX-1 62 페이지)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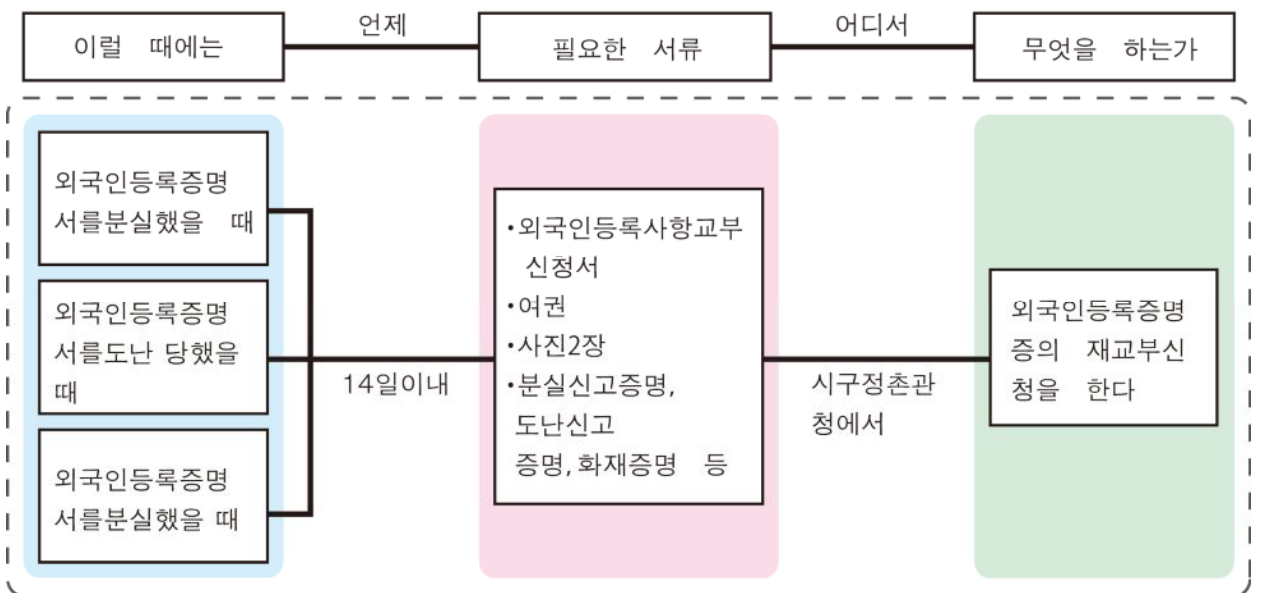


3. 확인 (전환) 수속



외국인등록을 한 다음 원칙적으로 5년 (영주자 및 특별영주자는 7년) 마다 거주지의 시구청총사무소에서 외국인등록의 내용을 확인하는 수속을 해야 합니다. 만 16세미만은 필요없지만 만 16세가 되면 30일 이내에 확인수속을 해야 합니다.

4. 재교부



외국인등록증을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거주지의 시구청총사무소에서 재교부의 수속을 해야 합니다. 여권, 사진이외에도 분실신고, 도난신고도 필요에 따라 제출합니다.

5. 교환교부

외국인등록증이 찢어지거나 더러워진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교환교부신청을 합니다.

